

CITY OF LOMITA
Water Utility
24300 Narbonne Avenue
Lomita, California 90717

발행인:
행정 서비스부

규칙 및 규정 번호 11

SB998에 따른 서비스 중단과 복원

규칙 및 규정 11은 통지, 수수료 배정, 서비스 중단, 항소 및 면제 자격성을 포함한 체납 계좌의 징수에 대한 로미타시 상수도국의 행정 조치를 나열합니다. 이 섹션은 SB 998 준수를 다룹니다.

이 규칙과 규정은 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번호 998을 준수합니다. 기존의 법은 모든 개인이 소비, 요리 및 위생 목적으로 충분한 안전하고, 깨끗하며, 경제적이고 이용 가능한 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의 기존 정책을 선언합니다. 로미타 시는 단수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체납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규칙 및 규정 번호 10과 11(A 및 B)은 시의 웹사이트에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및 타갈로그어 그리고 로미타 상수도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구의 10%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납부 불능으로 인해 중지된 계정에 대한 연례 보고서가 시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주 수자원 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상수도 규칙 및 규정은 Lomitawater.com과 Lomita.com/cityhal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 납기 초과 청구서

송부된 청구서가 청구서에 표시된 날짜 이전에 결제되지 않는 경우 납기가 초과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B. 청구서 미납

체납 계좌:

청구서에 대한 결제가 청구기간(대략 45일) 다음 달 15영업일의 마감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청구됩니다. 청구서가 연체된 경우, 상수도국은 단수를 피하기 위해 체납된 결제와 절차를 입주민(및 다를 경우 소유자)에게 알리는 레드 태그 경고를 발행합니다.

통지서에는 최소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객 이름,
- 고객 주소,
- 체납 금액,
- 연장 신청 방법,
- 항소 방법,

CITY OF LOMITA
Water Utility
24300 Narbonne Avenue
Lomita, California 90717

발행인:
행정 서비스부

- 결제 요금제 요청 방법

레드 태그 통보로부터 10일 후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시에서는 최종 옐로우 태그 통지서를 발송하여 서면 옐로우 단수 통지서에 표시된 날(옐로우 태그 통지서로부터 적어도 5일 후)

CITY OF LOMITA
 Water Utility
 24300 Narbonne Avenue
 Lomita, California 90717

발행인:
 행정 서비스부

오후 5시까지 시에 결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시에서 해당 주소에 대한 상수도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단수 통보를 입주민에게 전달합니다.

시에서는 만약 고객 계좌가 60일 동안 체납되는 경우 요금 미납에 따른 단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

고객은 상수도 규칙 및 규정 10에 상세 기재된 바와 같이 수도 청구서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시의 상수도국((310) 325 - 7110)에 전화하여 단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재개:

만약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모든 요금이 납부되어야 하며 크레딧 및/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예치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수수료 결의안에 따라 서비스 복원을 위한 재연결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면제:

만약 고객이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시에서는 12개월 동안 한 번까지 연체료를 면제시켜줄 수 있습니다.

만약,

- 1) 거주 고객이 수도 청구서에 대해 항소하고 결정이 보류 중이거나, 또는
- 2) 거주 고객이 다음과 같이 정상 참작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도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 a. 질병 - 고객이나 고객의 세입자가 수도 서비스 중단이 해당 거주지의 입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입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내포함을 증명하는 진료의의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b. 재무적 불능 - 고객이 상수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청구 주기 내에 수도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재정적으로 납부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고객 가구 내 임의의 구성원이 (i) 다음 혜택 중 하나의 수령인인 경우: CalWORKS, CalFresh, 일반 지원, Medi - Cal, SSI/State 보조 지급 프로그램 또는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 또는 (ii) 고객의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임을 신고한

CITY OF LOMITA
Water Utility
24300 Narbonne Avenue
Lomita, California 90717

발행인:
행정 서비스부

경우, 해당 고객은 ‘재무적으로 납부 불능’ 으로 간주됩니다.

c. 대안 결제 계약 - 고객은 시에서 수립한 대안 결제 계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합니다.

또한, 위 2b의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고객에 대한 재연결 수수료는 정상적 근무 시간에 \$50달러, 근무 외 시간에 \$15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2021년 1월부터 CPI에 따른 연간 조정).

시에서는 상기 2b를 충족하는 저소득 고객에 대해 1년에 한 번까지 체납 청구서에 대한 이자를 면제합니다.